

7.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총장 또는 연구소를 통하여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교외연구비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다.

제3조 (징수율) ①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율은 10%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비 지급기관에서 본 대학교에 별도의 간접연구경비를 정하여 지급한 연구비나 간접연구경비의 상한을 정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교무입학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019.2.8.개정)

제4조(회계) 간접연구경비는 재무과에서 원천징수하여 특별회계의 특별적립금(연구간접경비) 과목에 계상한다.

제5조(관리기관) 간접연구경비의 적립금은 교무입학처에서 관리한다. (2019.2.8.개정)

제6조(과실) 간접연구경비 및 연구비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제4조의 특별적립금(간접연구경비) 계정에 적립한다.

제7조 (사용) ① 간접연구경비의 적립금은 연구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징수한 10%의 간접연구경비는 연구소의 연구지원비로 사용한다.

③ 제1항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예산·결산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준용)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제 규정과 연구비 지급기관의 규정 및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은 연구진흥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